##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04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소병훈·박홍배·안태준

안호영 • 이병진 • 정성호

박용갑・박 정・권칠승

송재봉 · 김윤덕 · 노종면

서미화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 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 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 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비용 환수 및 환수금의 분할납부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급여의 환수) ①・② (생	제57조(급여의 환수)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환수금		
	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환수금 및 <u>제3항에</u> 따른 연	<u>⑤</u> <u>제4항에</u>		
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			
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			
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			
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			
당할 수 있다.			